



몰카(카메라등이용촬영)도 인격살인이라 불릴만큼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범죄입니다..!

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<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>

▶ 사례

- 버스정류장, 도서관, 노상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
- 수영장, 탈의실, 공공화장실 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

※ 이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경우 여성이 촬영자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

▶ 소형 몰래카메라 종류

			
차키형	안경형	시계형	볼펜형
			
라이터형	단추형	핀홀	화재경보기형

몰카범·영상유포자를 신고로 검거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!
수상한 움직임이나 반짝임이 느껴진다면 바로 112!!

제 주 서 부 경 찰 서 장